#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2. 8.

금 융 위 원 회

1. 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 (안 제16조, 제16조의4, 별표 1의3)

#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으나, 보험업권 국제회계기준(IFRS17) 도입을 위해 해당 보험업법 시행령 조항의 개정이 추진 중
  -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 유지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

# 나. 제ㆍ개정 내용

○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인용 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 라. 입법효과

○ 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

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2. 예금보험금 계산시 예치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(안 제18조)

#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, 금융투자회사가 예치기관에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예금보험금보다 먼저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
  - 예금자(투자자)가 예금보험금과 투자자예탁금을 중복 청구하는 등의 혼란 발생 소지

#### 나. 제 • 개정 내용

○ 예금보험금 계산시 예치기관이 먼저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하도록 명확화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○ 예금보험금 계산방법을 명확화하여 예금자(투자자)의 혼란을 방지

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3.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도·감독 내용을 구체화 (안 제21조)

#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4항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정리금융 회사에 대한 지도·감독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.
  -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음

## 나. 제 · 개정 내용

○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도·감독 내용을 구체화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○ 예금자보호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

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## 4.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기준 등을 명확화(안 별표 3)

#### 가. 제 • 개정 이유

○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시 위반횟수 적용 방법 등이 불명확하고,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 제외 규정이 미비

## 나. 제 • 개정 내용

-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시 위반횟수를 위반행위 전 처분의 다음 차수로 하되,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 처분은 위반횟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명확화
-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제외를 명시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○ 과태료 가중처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및 합리성을 제고

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